

부산직할시 사하구 조례 제 호

##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 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목중 “의회사무기구”를 “의회사무과”로 한다.

제 1 조(목적)중 “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기구”를 “부산직할시사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과”로 한다.

제 2 조(조직) 제 1 항중 “간사의”를 “사무과장과”로 하고, “간사는”을 “사무과장은”으로 한다.  
같은조 제 2 항중 “간사는”을 “사무과장”으로 하고, 제 3 항중 “간사의”를 “사무과장의”로 한다.

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중 “사무직원의 정수는 13명”을 “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 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p>	<p>..... <u>의회사무과</u> .....</p> <p>.....</p>
<p>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u>부산직할시 사 하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기구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u>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 조(목적) .....</p> <p>..... <u>부산직 할시사하구 의회(이하“의회”라 한다)사무과</u> .....</p> <p>.....</p>
<p>제 2 조(조직)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 하여 <u>간사와 직원(이하 “사무직원”이라 한 다)</u>을 두며, <u>간사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 한다.</u></p> <p>② <u>간사는 의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u></p> <p>③ <u>간사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u></p>	<p>제 2 조(조직) ① .....</p> <p>..... <u>사무과장</u>과 ..... ( ..... ..... ) ....., <u>사무과장은</u> .....</p> <p>.....</p> <p>② <u>사무과장은</u> .....</p> <p>.....</p> <p>② <u>사무과장의</u> .....</p> <p>.....</p>
<p>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 의회에 두는 <u>사무 직원의 정수는 13명으로 하며, 그 직급별 정원은 부산직할시사하구지방공무원정원규 칙으로 정한다.</u></p>	<p>제 3 조(사무직원의 정수) .....</p> <p><u>사무직원의 정수는 14명</u> .....</p> <p>.....</p> <p>.....</p>